

직권 조치 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4년 07월 18일

문막읍장 인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우 *숙	우 *숙 1963-12-04	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시장3길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4-07-12